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75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 박지혜・김문수・이건태

박희승ㆍ이훈기ㆍ김 윤

채현일 • 임미애 • 강준현

민형배 · 황명선 · 황정아

이광희 • 이재강 • 송재봉

최민희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 수요·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,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%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,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필요한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·공급"을 "다음 각 호의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·공급
- 2.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 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)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25조(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| 제25조(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|
|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 | |
| 획 및 실행계획 등 신·재생에 | |
| 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| |
|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<u>필요한</u> | <u>다음 각</u> |
| <u>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</u> | 호의 사항 |
| <u>· 공급</u> 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 | |
| 사・작성・분석 및 관리할 수 | |
|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 | |
| 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 | |
| 른 기관이나 신·재생에너지 | |
| 설비의 생산자・설치자・사용 | |
|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| |
| <u><신 설></u> | 1.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 |
| | <u>요·공급</u> |
| <u><신 설></u> | 2.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(「산 |
| |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|
| | 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|
| | 단지를 말한다)의 신ㆍ재생에 |
| | 너지 사용량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